

2003 대구하계U대회 잉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2016. 4. 1

경상북도 승인 2016. 4.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체육회”이라 한다)체육진흥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로부터 기증받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잉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기타 운영수익금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할 경우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전문(엘리트) 체육인을 위한 체육회관 건립 및 그 부대시설 구입 사업기금은 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에는 다른 명목으로 대여하거나 일시 전용할 수도 없다.

제5조(기금의 예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관리위원회)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에 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위원은 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본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사항

제8조(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②표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는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회계관계직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 사무처장을 기금관리원, 총무부장을 분임기금관리원으로 지정한다.

제11조(회계검사) 위원장은 기금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 감사로 하여금 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제4조 및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정 및 집행사항은 차기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기금관리 등 회계관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체육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공로자 표지 입석) 체육회관 건립시 기금 조성 공로자에 대한 공적 표지 입석한다.

제15조(개정 제한) 본 규정의 개정 시 제4조 기금의 사용 목적은 개정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